

##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송종류	민사소송	법원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단○○○○○○○	사건유형	학교폭력
원고	□□□ 외 2명	피고	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외 3명
판결선고일	2019. 7. 23. 원고일부승소 (교육감 승소)	비고	
사건개요	<p>① 원고 □□□는 2016년 당시 A중 1학년에 재학중이었는데, A중에서는 한·중 문화 교류방문의 일환으로 중국 칭다오를 탐방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원고 □□□를 포함한 학생 40명, 피고 학교장과 교무부장, 교사가 동행하였음.</p> <p>② 탐방기간 동안 원고 □□□와 피고 △△△, ▲▲▲ 사이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하 '이 사건 가해항위')이 발생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방 첫째날 밤인 2016. 10. 17. 20:00경 중국 청도 B호텔 809호에서 피고 △△△, ▲▲▲이 원고 □□□를 비롯한 1학년 학생들과 배개싸움을 하는 도중 피고 ▲▲▲이 물통으로 원고 □□□의 머리를 때렸고, 성냥개비에 불을 붙여 몸에 대려 하였음.</li> <li>- 2016. 10. 18. 관광지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피고 △△△, ▲▲▲은 원고 □□□에게 참교육(후배들을 때려 교육시키는 것을 의미)을 안 시킬 테니 돈을 달라고 하여 원고 □□□는 피고 △△△, ▲▲▲에게 합계 80위안을 주었음.</li> <li>- 2016. 10. 20. 소어산 밤하늘공원에서 피고 ▲▲▲이 주먹으로 원고 □□□의 얼굴을 때렸음.</li> </ul> <p>③ 원고 □□□는 2016. 10. 24. 뇌진탕증후군,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상세 불명의 복강내기관의 손상,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으로 2016. 11. 22. 까지 C병원에 입원하였고, 2016. 10. 27. (의증)급성 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고, 이후 계속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음.</p> <p>④ 피고 △△△, ▲▲▲은 평소에도 다른 학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왔고, 원고 □□□가 첫째날(2016. 10. 17.) 밤 폭행당한 사실을 다음날 아침에 인솔 교사에게 신고하였음에도 위 교사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학생들의 휴대폰 충전기를 압수하는 바람에 원고 □□□는 부모에게 알릴 수도 없었으며, 폭행을 목격한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에게 신고하려 하자 이를 막기까지 하였음. 이처럼 인솔교사들이 원고 □□□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인솔 교사들과 피고 학교장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 피고 인천광역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한다며 소를 제기함.</p>		
주 문	<p>1. 피고 △△△, ▲▲▲은 공동하여 원고 □□□에게 5,000,000원, 원고 ■■■■, ■■■■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17.부터 2019. 7. 23.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p> <p>2. 원고들의 피고 △△△, ▲▲▲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 인천광역시 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p> <p>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 ▲▲▲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11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 인천광역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p> <p>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p>		

<p>청구 취지</p>	<p>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37,720,317원, 원고 ■■■■, □□□에게 각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p>
<p>판결 이유</p>	<p>A중 한중문화교류방문단 활동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의 연장에 해당하므로 교사들의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나, 인솔교사들과 피고 학교장이 이 사건 가해행위에 관하여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인천광역시 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음.</p> <p>① 피고 △△△, ▲▲▲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학생들이었다거나 원고 □□□와의 관계에서 폭행 또는 괴롭힘의 동기가 될만한 원인이 존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음.</p> <p>② 인솔교사들이 원고 또는 다른 학생들로부터 2016. 10. 17.자 폭행사건(피고 ▲▲▲이 물통으로 원고 □□□의 머리를 때렸고, 성냥개비에 불을 붙여 몸에 대려 하였음.)을 보고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인솔교사들이 피고 △△△, ▲▲▲의 원고 □□□에 대한 폭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p> <p>③ 갈취가 일어난 장소는 관광지로 이동하는 관광버스 안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폭행이 일어난 장소는 야외 관광지(소어산 밤하늘공원)로서, 다수의 일행이 함께 있는 개방된 장소에서 학생들 사이의 폭행, 갈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돌발적으로 벌어진 사고에 가까움.</p> <p>④ 그 밖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인솔교사들의 과실, 즉 휴대폰 충전기 압수, 다른 학생들의 신고를 막은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p>